

전주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6590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5. 13.

판 결 선 고 2021. 6. 3.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가소9602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85,0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9. 8. 2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2019. 8. 2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2020. 7. 14. 원고가 신청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안내문을 확인하였고, 2020. 7. 24. 사건기록을 열람하여 제1심판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20. 7. 27.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피고가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제22 내지 34호증, 제36 내지 38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과거 1) 동서지간이었던 자들로, 원고의 배우자인 D은 피고의 전 배우자인 소외 E의 형이다.

2) D, 소외 F, E는 2007. 4. 6. 소외 G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명의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어머니인 소외 H으로 하여 보험료를 163,251원, 보험기간을 2007. 4. 6.부터 2032. 4. 6.까지, 납입기간을 20년으로 하고, 피보험자가 80세 보험 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생존하는 경우 만기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1보험 2종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D, F, E는 2007. 4.경부터 D의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월 10만 원씩을 입금(이하 '이 사건 회비'라 한다)하여 이 사건 보험료 및 가족 경조사비로 사용하였고, 2012. 5.경 이 사건 보험의 갱신으로 보험료가 213,267원으로 인상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비 전액을 이 사건 보험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4) 피고는 2012. 2. 13.부터 2014. 3. 6.까지 D,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합계 661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893원이 발생하였다.

5) 한편 E는 2013. 6.부터 2014. 4.까지 11회분 회비 합계 110만 원 상당을 미납하였고, 이 사건 보험은 2014. 4.경 보험금 미납으로 실효되었다.

6) 원고는 2015. 9. 24. 및 2016. 3. 2. 피고에게 미납한 이 사건 회비를 납입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이 사건 보험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는 2018. 9. 11. 보험회사로부터 휴면보험금 7,563,300원과 기타지급금의 합계인 7,791,923원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출 및 이자 6,810,893원을 공제한 나머지 981,030원을 지급받았다.

8) D, F는 2021. 4. 5. 원고에게 D, F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각 600만 원을 양도하고, 원고는 같은 날 D, F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D, F, E와 상의 없이 이 사건 보험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고, 2014. 4.경 이 사건 보험을 실효되게 하여 이 사건 휴면보험금 7,563,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D, F는 이 사건 보험 납입금 14,913,468원의 2/3인 9,942,312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D, F로부터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의 휴면보험금 7,5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의 성립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이 사건 보험을 실효되게 한 사실, 이 사건 보험 납입총액은 15,279,525원으로 이중 D, F가 납입한 금액은 10,186,350원(= 15,279,525원 ×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 F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보험금 지급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경 E와 상의하여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400만 원을 사용하였거나, 시어머니인 H의 병원비, 부양료(월 50만 원)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7,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H은 이 사건 대출시점으로부터 1년 8개월 이후인

2015. 12. 5.경 홍추 제12번 골절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는 E와 상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56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보험의 실효시점인 2014. 4.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19. 2. 2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로 원고가 구하는 827,100원²⁾의 합계인 8,38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E가 D,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E와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휴먼보험금 7,563,300원의 1/3에 해당하는 2,521,100원은 E가 D, F에게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상계 항변에 관하여

가) 피고는 E의 L에 대한 대여금 채권 200만 원, E가 L와 공동납부하기로 약정한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채권으로 L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가 L에 대하여 위와 같은 대여금 채권 및 약정금 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는 공동납부하기로 한 자동차보험 및 세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설령 E가 위와 같은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로부터 위 대여금, 약정금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나) 피고는, E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3,110,823원(D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지급한 회비금액과 이 사건 보험료 납입금의 차액)으로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E가 위와 같은 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E로부터 위 부당이득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이 부분 항변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김진웅, 판사 곽지영

1) 피고와 E는 2018년경 이혼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의 실효시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 4. 1.부터 2019. 2. 22.까지 7,563,000원에 대하여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1,852,416원이므로, 원고는 위 이자 중 일부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